

의안번호	2208127
의 퇴 인	조인철 의원
회 답 일	2025. 4. 3.
추 계 번호	25F080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－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에서 24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확대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6년 934억원, 2027년 921억원 등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총 1,855억원(연평균 9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중 다자녀 요건 확대(안 제22조의2)	-934	-921	-1,855	-92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중 다자녀 요건 확대)	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 확대 - 감면대상 확대: (현행)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→ (개정안) 24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2조의2(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 등에 따라 2026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심사 및 공포 등을 감안하여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 - 향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 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- 향후 다자녀 기준인 2자녀 및 3자녀 이상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가정
 - 2025년1월1일부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수를 종전 3명이상 2명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, 현재 2자녀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실적이 부재한 관계로 3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자료를 기초로 추계
 -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의 50%(3자녀 이상 면제)
 - (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건수 추정) 3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가구의 비중($6.6\% = \text{감면건수} / \text{가구수}$)이 2자녀 양육 가구도 같을 것으로 가정
 -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 (2024.11.)에 따른 2023년 기준 다자녀(3자녀) 양육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는 28,891건(508억원)
 -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 상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전체 가구수(2023년 기준)는 459.1만가구이며, 그 가운데 2자녀 가구는 216.9만가구, 3자녀 이상 가구는 43.5만가구로 집계¹⁾
 - 「2024년 지방세통계연감」 (2024.11)의 최근 자료(2023년 기준)와 맞추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는 2023년 기준을 적용
 - (향후 2자녀 및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 건수 전망) 향후 2자녀 및 3자녀 이상 양육가구의 자동차 취득 건수는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통계청, 「인구총조사」 상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연

1)

[표] 미성년자 양육 가구수 현황: 2023년

(단위: 가구)

구 분	합 계	1자녀	2자녀	3자녀 이상
가구수	4,590,741	1,986,795	2,168,505	435,441

자료: 통계청(인구총조사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평균 감소율(2자녀 4.2%, 3자녀 5.8%) 만큼 감소할 것으로 가정

[표 2]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수 추이

(단위: 가구)

구분	합계	1자녀	2자녀	3자녀 이상
2021년	4,827,184	1,975,132	2,361,745	490,307
2022년	4,690,686	1,989,297	2,245,478	455,911
2023년	4,590,741	1,986,795	2,168,505	435,441
연평균 증감율	-2.5%	0.3%	-4.2%	-5.8%

자료: 통계청(인구총조사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향후 1건당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) 최근 3년(2021~2022년)간의 3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 1건당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(1.4%)을 반영한 감면액이 2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
- 다자녀 연령기준 확대(18세 미만→24세 미만) 에 대해서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한 대상연령 확대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된다고 가정
 - 재정패널 자료²⁾의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의 다자녀 가구 수 비중은 각각 10.3%·2.2%, 24세 미만 가구 수 비중은 15.2%·3.7%로 연령확대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
 -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(2자녀 50%, 3자녀 이상 면제)
 -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,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,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,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,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
2)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16차년도(2022년 기준) 자료

- 다만,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
- 상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대체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
 -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
 -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
 -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
- 개정안에 따른 조정사항
 - 자녀 연령 요건: (현행) 18세 미만 → (개정안) 24세 미만
- (감면실적)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은 2021년 597억원(34,928건)에서 2023년 508억원(28,981건)으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- 1건당 감면액은 2021년 171만원에서 2023년 176만원으로 증가추세(1.4%)

[표 3] 최근 3년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

구분	2021	2022	2023	합계	연평균/ 연평균 증가율
건수(건)=A	34,928	27,747	28,891	91,566	30,522
취득세 감면액 (억원)=B	597	481	508	1,586	529
1건당 감면액 (만원)=B/A	171	173	176	-	1.4%

자료 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는 현행 자녀 수에 따른 효과를 추계한 후 자녀 연령 기준 확대(18세 미만 → 24세 미만)에 따른 효과를 추계

(가) 현행 기준에 따른 세수효과

- (3자녀 이상 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액) 현행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은 2026년 562억원, 2027년 568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,129억원(연평균 565억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 -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 연평균 건수(30,522)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취득 자동차 1건당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3자녀 이상 양육자 1건당 자동차 취득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(1.4%) 적용하여 추계

[표 4] 향후 3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정액

(단위: 가구, 억원)

구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가구수(A)	30,522	30,522	91,566	30,522
1건당 감면액(B)	184만원	186만원	-	-
취득세 감소액(A×C)	562	568	1,129	565

- (2자녀 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액) 현행 2자녀 양육자 취득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은 2026년 1,158억원, 2027년 1,122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2,281억원(연평균 1,140억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 - 2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 건수는 2023년 기준 2자녀 가구(216.9만가구)에 3자녀 이상 양육 가구 가운데 자동차 취득세 감면 비중 6.6%와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2자녀 가구의 연평균 감소율(4.2%) 만큼 감소할 것으로 가정
 - 향후 2자녀 양육자의 취득 자동차 1건당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3년(2021~2023년)간 3자녀 이상 양육자 1건당 자동차 취득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(1.4%) 적용하여 추계
 - 2자녀 양육자의 취득 자동차 감면액은 취득세의 50% 반영

[표 5] 향후 2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정액

(단위: 가구, 억원)

구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가구수(A)	125,920	120,659	377,990	125,997
1건당 감면액(B)	92만원	93만원	-	-
취득세 감소액(A×C)	1,158	1,122	2,281	1,140

(나) 다자녀 연령기준 변경(18세 미만 → 24세 미만)에 따른 세수효과

- 위 (가)에서 추정된 현행 다자녀 기준에 따른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연령기준 확대(18세 미만→24세 미만)비율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추계

[표 6] 재정패널 기준 2자녀 및 3자녀 가구의 연령별 가구 수 비율: 18세 미만, 24세 이하

(단위: %)

구분	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수 비중	24세 미만 다자녀 가구수 비중
2자녀 가구	10.3	15.2
3자녀 가구	2.2	3.7

자료: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16차년도(2022년 기준) 자료

-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는 2026년 934억원, 2027년 9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감면액과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등 전망액에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한 연령 확대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

[표 7] 자녀 연령 확대에 따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추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	2027	
	2자녀 가구	3자녀 가구	2자녀 가구	3자녀 가구
기준 감면액(A)	1,158	562	1,122	568
자녀연령 확대 감면액 [B=A×(24세 미만 비중/18세 미만 비중)]	1,709	945	1,656	955
취득세 감면 증가액 (=B-A)	551	383	534	387
취득세 감면 증가액 합계	934		921	

주: 1. 기준 감면액은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망액,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망액
2. 감면비율은 재정패널 전체 가구수 가운데 2자녀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구의 18세 미만 가구 비율 각각 10.3%·2.2%, 24세 이하 가구 비율 각각 15.2%·3.7%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에서 24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확대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는 2026년 934억원, 2027년 921억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,855억원(연평균 9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다자녀 연령기준 확대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 추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누적	연평균
취득세 감면액	934	921	1,855	928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